

報告書發刊에 즈음하여

韓,日兩國은 古來로부터 活潑한 交流를 통해, 서로간에 커다란 影響을 주고 받는 이웃관계를 維持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에 이르서는 兩國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긴밀한 關係로 發展되었으며, 이러한 土臺위에 兩國頂上은 最近의 相互 訪問을 통하여 未來指向의 友好協力關係를 構築해 나가기로 合意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最近 挺身隊問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不幸했던 過去史에서 緣由하는 感情的 葛藤이 韓,日關係의 發展에 걸림돌로 作用하고 있는 것도 事實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歷史를 發展적으로 克服하는 것이야말로 兩國이 진정한 善隣友邦으로서의 關係를 構築해 가는데 있어서 必須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認識下에서 우리 政府는 昨年부터 言論等에 浮刻되어 우리 國民의 커다란 關心의 對象이 되어 온 挺身隊問題와 關聯하여, 日本政府에 대하여 철저한 真相糾明과 이에 따른 應分の 措置를 促求함과 동시에, 그간 本人을 班長으로하여 17個 關係部處 關聯課長으로 構成된 '挺身隊問題實務對策班'을 設置하여, 各種 資料를 蒐集하고, 被害當事者의 申告를 接受하는 한편, 앞으로의 對策을 綿密히 檢討하고 있습니다.

日帝下 異隊

歷史 研究 記事

中 古 報告書

目 次

第1部：挺身隊問題의 現況	1
1. 그간의 經緯	3
2. 우리 政府의 眞相糾明 努力	8
3. 日本政府의 眞相糾明 努力	10
4. 今後 對策	16
第2部：日帝下 軍隊慰安婦 實態調査結果	19
1. 軍隊慰安所의 設置	21
2. 慰安婦 募集	31
3. 輸送方法	33
4. 配 置	44
5. 慰安所의 管理	44
6. 移 動	55
7. 戰爭末期의 狀況	55
8. 聯合軍에 의한 現地占領以後 狀況	61
9. 結 語	71

第3部：軍隊慰安婦 證言事例	71
----------------	----

第4部：日本政府 發見文書	71
---------------	----

第5部：參考資料	71
----------	----

한편, 日本政府도 92.1. 미야자와總理의 訪韓 以後 總理府가 主
이 되어 外務省·防衛廳등 6個 關係部處가 日帝下 軍隊慰安婦와
聯한 文書를 調査하여 지난 7.6. 그간의 調査結果를 發表한 바 있
니다.

今番 報告書는 이러한 韓·日 兩側의 調査結果를 綜合·整理한 것
로서, 日帝植民地下에서 우리 民族이 겪은 受難의 歷史의 가장
두웠던 斷面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政府는 不幸했던 過去에
한 資料를 整理하여 一般에게 公開함으로써 過去를 올바르게 糾
하는 契機를 마련한다. 觀點에서 이 報告書를 作成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歷史의 眞實한 敎訓을 우리 國民 모두가 다시 한번
들게 함으로써 밝은 未來를 향하여 힘차게 前進해 가는 契機가 될
을 期待하여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이 報告書의 發刊에 즈음하여 諮問에 應해주신 學界,
團體 및 關係部處의 各位분들께 感謝드립니다.

1992. 7. 31.

國家問題對策班長 金 錫 友

(外務部 亞洲局長)

第1部

挺身隊 問題の現況

1. 그간의 經緯

韓國女性團體聯合, 韓國教會女性聯合會 등 女性團體들이 中心이 되어 89年末부터 挺身隊問題를 提起하고 이에 대한 言論의 關心이 高潮되었다. 이와 關聯하여 90.6.6. 日本參議院 豫算委員會에서 모토오카 쇼지 社會黨議員이 軍隊慰安婦의 調査를 日本政府側에 要請했으나, 日本政府는 “軍隊慰安婦는 軍.國家와 關係가 없고 民間業者가 한 일”이라고 答辯했다.

91.11.21. 前 야마구치縣 勞務報國會 動員部長 요시다 세이지는 北海道新聞에 자신의 慰安婦徵用 關與事實을 告白했으며, 91.11.28. NHK TV의 慰安婦問題 特輯 放映時 와타나베 日本 外務省 報道官은 “軍의 關與問題를 否定하는 것은 아니나 調査의 실마리가 되는 法的資料가 發見되지 않아 公的인 立場을 밝히기 어렵다”고 言及했다.

91.12.6에는 前 軍隊慰安婦 김학순氏 등 3名이 日本政府를 相對로 補償을 要求하는 訴訟을 提起하여 言論이 이를 大的으로 報道하였고, 이와 關聯하여 가또 日本 官房長官은 91.12.6의 記者會見에서 “政府關係機關이 關與했다는 資料가 發見되고 있지 않아 闡明하기 困難하다”는 立場을 表明하였다.

當時 미야자와 日本總理의 訪韓이 92年 1月로 豫定되어 있는 狀況에서 韓·日 兩國 言論에서는 挺身隊問題가 연일 크게 報道되어 日本總理의 訪韓을 앞두고 우리 國民의 感情的 問題로 飛火하였다.

우리 政府는 挺身隊問題를 公式的으로 提起하기로 方針을 정하고, 12.7.東京에서 開催되었던 韓·日 亞洲局長會議時 日本政府에 대해 挺身隊問題에 관한 徹底한 真相糾明 및 이에 따른 適切한 措置를 講究하도록 促求한 以來 外交經路를 통하여 이 問題의 深刻性과 우리의 國民 感情을 周知시키면서, 日本政府가 이 問題를 回避할 것이 아니라 過去의 歷史를 올바르게 直視하여 이를 바탕으로 밝은 未來의 韓·日關係를 構築해 간다는 次元에서 우선 徹底한 真相糾明에 임해 줄것을 強力히 要求하였다.

日本政府는 91.12.12. 우리 政府의 要請에 따라 內閣官房主宰 關係部處會議에서 政府關與與否 等 關聯事項에 대한 調査를 指示하였다.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 우리 國會에서도 91.12.13. 挺身隊問題에 관한 請願審査가 다루어져 挺身隊問題對策協議會代表의 參考人

陳述 및 前 軍隊慰安婦의 證言이 있었으며, 이와 關聯한 質疑 및 答辯이 행해졌다.

이무렵 우리 政府는 美國, 日本, 英國, 네델란드 等 10個國 海外駐在公館에 關聯資料를 調査하도록 指示하였다. 이와 關聯, 駐美 韓國大使館은 美國 國立 文書館에서 日本軍이 慰安婦 募集·輸送·管理 등에 介入한 事實을 立證하는 文書를 發見하였다. 同 文書는 인도-버마 戰線의 美戰時情報局 心理戰팀이 버마의 미트키나에서 日本軍 敗走時 붙잡힌 韓國人慰安婦 20名과 慰安所管理者 2名을 審問하여 작성한 調書이다. 外務部는 同 文書寫本을 日本側에 傳達하여 調査에 參考하도록 하였다.

한편, 日本 中央大 요시미 요시아끼教授(日本現代史 專攻)는 자신이 過去에 日本 防衛廳 防衛研究所에서 본 기억이 있던 慰安婦關聯 日本軍의 通達·電報·指示 電文 等を 다시 찾아냈고, 92.1.11. 同 文書의 內容 일부가 아사히新聞에 報道되었다. 이 文書는 日本軍이 慰安所設置, 慰安婦募集을 監督·統制하였음을 證하는 것이었다.

本政府는 上記와 같은 證據資料가 國庫법에 따라 92.1.13. 가

또官房長官이 談話를 發表하고, 日本軍의 關與를 최초로 公式 認定하면서 향후 關係省廳의 資料調査를 徹底히 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간 日本政府가挺身隊問題의 存在를 否認하거나, 또는 民間業者가 한 일이라고 하면서 政府의 關與를 否認 해왔던 점에 비추어,挺身隊問題의 徹底한 眞相糾明을 위한 重要한 契機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기포 관방장관 담화

“소위 중군위안부 문제에 구일본군이 관여했다고 생각됨을 나타내는 자료가 방위청에서 발견되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 사실을 엄숙히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소위 중군위안부의 모집 및 위안소의 경영등에 구일본군이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일본정부는 중군위안부로서 필설로는 다 할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분들에 대하여 충심으로 사과의 반성의 기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정부로서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깊은 반성과 결의에 입각하여 평화국가로서의 입장을 견지함과 동시에 미래를 향해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미야자와총리 방한시 총리로부터 본건관련 표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보상문제는 재판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사법부의 판단을 보고 대처해 나가자 합니다.”

한편, 92.1.17. 미야자와 日本總理의 訪韓時 開催되었던 韓.日

頂上會談에서 盧泰愚 大統領은挺身隊問題等 過去史問題에 대하여 日本政府가 보다 積極的으로 眞相을 糾明하고 그 結果에 따라 應分の 措置를 誠實히 취하도록 要請했으며, 이에 대해 미야자와總理는 過去 日本의 行爲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反省과 謝過를 한다는 뜻을 表明하고, 하루 빨리 眞相을 糾明하여 適切한 措置를 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미야자와總理는 同日 午後 國會에서의 演說에서 軍隊慰安婦問題에 대하여 謝罪와 反省의 뜻을 表明하였다.

※ 미야자와총리 국회연설

“... 이러한 중요한 파트너쉽의 일환으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양국간 신뢰 관계를 확고히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나라와 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안될 것은 수천년에 걸친 교류속에서 역사상 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피해자이고 귀국이 피해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은 그간 한반도의 여러들이 우리나라의 행위에 의해 참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체험했다는 것 대하여 여기에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 반성의 뜻과 사과의 기분을 표명합니다. 최근 소위 중군위안부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바, 본인은 이러한 것은 정일 마음아픈 일로서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본인은 지난 2차대전시 살았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 우리 세대가 잘못이 두번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21세기를 담당하는 다음 세대에 역사교과서 전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을 포함

우리 세대의 책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런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보급하는데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생각입니다. 본인은 과거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두번다시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경계심을 국민 특히 청소년들에게 배양시켜 나갈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政府의 眞相糾明 努力

우리 政府는 今年 1. 24부터 挺身隊問題實務對策班(外務部 亞洲局長을 班長으로 하여, 17個 部處 關係課長으로 構成)을 設置, 그간 月 1回 定期會議 및 隨時 會議을 開催하여 挺身隊問題에 관한 徹底한 眞相糾明과 關聯對策 等を 協議하여왔다.

우리 政府는 挺身隊實務對策班을 暫定的으로 今年末까지 延長 運營하여 同 問題와 關聯된 諸般事項을 繼續 協議하기로 하고, 6 月末까지의 推進現況을 7.3.發表한 바 있다.

우리 政府는 우선 徹底한 眞相糾明에 力點을 두고 日本政府에 資料調査를 要請하는 한편, 國內的으로도 各部處内の 文書資料를 調査하였다.

外務部는 주로 2次大戰時 聯合軍側 國家에 駐在하는 海外公館과

東南亞 各國 駐在 海外公館에 駐在國의 文書資料를 調査하도록 指示하고, 各部處는 각각 保管하고 있는 關聯 文書資料를 調査 하였다.

한편, 教育部는 日帝時 初中, 高等學校의 學籍簿를 調査하였는 바, 教育部가 現在 保管되어 있는 學籍簿만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는 小學校 勤勞挺身隊가 244名, 高等學校 勤勞挺身隊가 1名으로 도합 245名이었다.

또한 政府는 挺身隊問題實務對策班 會議에서 마련된 指針을 土臺로 內務部와 大韓赤十字社를 통하여 92.2.25-6.25間 挺身隊 被害者 申告를 接受한 結果는 總 390件으로써, 이중 勤勞挺身隊는 235名, 軍隊慰安婦는 155名인데, 現在 生存하고 있는 경우는 舊 勤勞挺身隊가 139名, 舊 慰安婦가 74名이었다.

이는 事案의 性格上 被害當事者들이 대부분 死亡했거나 生存해 있더라도 申告를 忌避하였기 때문에 申告숫자가 적게 나타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政府는 申告된 內容에 대해서는 個人 秘密을 徹底히 保護토록 할 것이며, 앞으로 挺身隊問題 對策마련에 參考할 豫定이다.

우리 國內에서는 勤勞挺身隊와 軍隊慰安婦가 混用되어 一般적으로 挺身隊로 通稱되고 있으나, 勤勞挺身隊와 軍隊慰安婦는 概念을 區分하여 使用할 必要가 있다.

勤勞挺身隊는 日本이 太平洋戰爭 遂行에 따라 極심한 勞動力 不足을 겪게되어 女性人力까지도 韓國內 혹은 日本의 軍需工場 等に 動員한 것으로써, 이와 같은 勤勞挺身隊 動員의 趣旨는 基本的으로 軍隊慰安婦 關連과는 성격이 다르다.

다만 女子勤勞挺身隊로 動員된 사람중 一部가 軍隊慰安婦로 轉換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3. 日本政府의 真相糾明 努力

앞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日本政府는 挺身隊와 관련한 證據資料들이 나오고 兩國內 輿論이 沸騰하기 始作하자, 91.12.12. 內閣官房 主宰로 關係部處會議를 갖고 이 問題와 關聯한 資料를 調査하도록 指示하였다.

미야자와總理의 訪韓前 가또官房長官이 軍隊慰安婦 問題에 대한 日本軍의 參與를 認定하고 露瀝한데 이어 미야자와總理的 訪

韓時 頂上會談 및 國會演說에서 同一한 趣旨의 立場表明이 있은 후, 日本政府는 總理府 外政審議室 主管下에 外務省, 防衛廳, 勞動省, 警察廳, 厚生省, 文部省 等 6個 關係部處가 政府保管 關聯文書의 發掘作業에 本格的으로 着手하였다.

日本政府는 92.7.6. 가또官房長官의 記者會見을 통하여 談話를 發表하고, 그간의 調査結果를 發表하였다.

※ 가또 관방장관 담화요지

“국적·출신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종군위안부로서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다시금 충심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뜻을 말하고자 한다.

이러한 잘못은 결코 되풀이하지 않도록 깊은 반성과 결의에 서서 평화국가의 입장을 견지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일.한관계, 기타 이시아재국, 지역과의 관계구축을 하도록 노력해 가고자 한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참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괴로움과 쓰러짐을 겪은 분들에 대한 기분을 어떤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각방면의 모든 의견을 들어가면서 성의를 갖고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日本政府가 發見한 關聯文書는 總 127件으로 內容은 주로 慰安所의 設置, 慰安婦 募集關係者 團東, 慰安施設의 設置 및 増築, 慰安所의 經營 및 監督, 慰安所 慰安婦의 衛生管理, 慰安所 關係者의 身分

證明書 發給 等으로 軍隊慰安婦問題에 日本政府의 關與가 있었다는 점을 公式 認定하고 있다.

※ 일본정부 조사결과 발표요지

가. 총 골

- 정부로서는 작년 12월부터 한반도 출신의 소위 종군위안부 문제에 정부가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관계자료가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성.청에서 관련자료의 조사를 행하였는 바,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발표하는 바임.
- 또한 정부로서는 금후에도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해 나갈 것임.

나. 조사기간 : 91. 12-92. 6

다. 조사기관 및 방법

○ 경찰청

- 경찰청 소관자료 조사
- 각 도.도.부.현의 본부장에 대해 조사 의뢰

○ 방위청

- 방위연구소를 비롯, 육사, 해상, 자위대, 방위대학교 등 방위청 관계 각기관에 서 전쟁사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

○ 외무성

- 외교자료관 등에서 외교사료를 중심으로 조사

○ 문부성

- 각 국.공.사립대학부속도서관에 대해 조사 의뢰
-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및 사립도서관에 대해 조사 의뢰

○ 후생성

- 복원(동원체제) 관계자료 및 군인, 군속 명부를 중심으로 조사

○ 노동성

- 본성 관계부.국 및 관계기관과 지방직업안정기관에서 조사

라. 조사결과

1) 각 성.청별 발견자료 건수(총127건)

○ 경찰청 : 0건

○ 방위청 : 70건

○ 외무성 : 52건

○ 문부성 : 1건

○ 후생성 : 4건

○ 노동성 : 0건

2) 분야별 발견자료 건수

○ 위안소 설치 관련자료 : 4건

○ 위안소 모집관계자 단속 관련자료 : 4건

○ 위안시설의 설치, 증축 관련자료 : 9건

○ 위안소의 경영, 감독 관련자료 : 35건

○ 위안소, 위안부의 위생관리 관련자료 : 24건

○ 위안소 관계자의 신분증명서등 발급 관련자료 : 28건

○ 기타(위안소, 위안부에 관한 기술등) 34건

3) 발견자료의 주요기술내용

가) 위안소 설치

- 당시 전선에 있어서 군점령지역내 일본군에 의한 강간등 불법 행위에 의, 반일정정이 조장되고 치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군인 개인의 행위

통첩의 배포가 있었음.

- 위안시설은 사기진작, 군기강유지, 범죄 및 성병예방 등에 대한 영향이 컸으므로 위안에 관한 재시설에 유익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교육지도 참고자료의 송부가 군부 내부에서 이루어졌음.

나) 위안부 모집 관계자 단속

- 군의 위신을 지키고 사회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위안부 모집 관계자의 인선을 적절히 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첩의 배포가 군내부에서 이루어졌음.

다) 위안시설의 설치, 증축

- 위안시설의 설치, 증축을 위해 병력을 차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명령의 통달이 있었음.

라) 위안소의 경영, 감독

- 각부대 위안소의 이용일시 지정, 이용요금, 이용에 있어서의 주의사항을 규정한 '위안소규정'이 작성되었음

마) 위안소, 위안부의 위생관리

- '위안소규정'에 위안소 이용시 피임기구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위안부의 성병검사를 군의관등이 정기적으로 행하여 불건전한 위안부는 취업을 금지시키는 조치가 있었음.

바) 위안소 관계자의 신분증명서 발급

- 위안소 개설을 위해 도항하는 자에 대해서는 군의 증명서에 의해 도항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문서의 배포가 있었음.

사) 기타

- 업자가 내륙에서 조달한 여자가 선박으로 이송될 예정임을 통지하는 전보의 발송이 있었음.

4) 이상과 같이 종군위안부 문제에 정부의 관여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었음.

우리 政府는 日本政府의 調査結果 發表와 關聯하여 92. 7. 6. 外務部 代辯人 論評으로 우리 政府의 立場을 表明한 바 있다. 이 論評에서 우리 政府는 日本政府의 眞相糾明을 위한 調査努力을 評價하면서 日本政府의 調査結果가 挺身隊問題의 全貌를 밝히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日本政府의 徹底한 眞相糾明 努力이 계속되기를 期待한다고 밝힘과 아울러, 日本政府의 具體적이고 誠意있는 措置를 促求하였다.

※ 일본정부의 정신대문제 조사결과 발표에 즈음한 외무부 대변인 논평

“일본정부는 7. 6. 정신대문제와 관련한 그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 바, 우리는 일본정부가 정신대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그간 총리부 주관하에 관계부처들이 성의를 갖고 관련문서를 발굴하여 조사를 해 온 노력에 대하여 이를 평가한다.

일본정부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7. 관련문서를 전달받는대로 면밀히 검토할 것이. 우선 일측의 발표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일본정부의 조사결과가 정신대문제의 전모를 밝히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일본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 노력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일본정부는 이번의 조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군대위안부문제와 관련한 일본정 관여를 재삼 확인하면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하고 있는 바, 우리는 이러한 취지 바후에 앞으로 일본정부의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로부터 통보받게 될 자료와 우리 정부가 그간 자체적으로 조사해 온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 발표할 예정이다.

今後 對策

挺身隊問題는 크게 眞相糾明 및 後續措置로 大別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不幸했던 過去의 歷史를 올바르게 照明한다는 次元에서 眞相糾明이 徹底히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政府로서는 徹底한 眞相糾明에 계속 重點을 두고 日本의 誠意있는 調査를 계속 促求해 갈 것이다. 특히, 이번의 日本政府 調査結果로는 挺身隊 問題의 全貌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日本軍의 慰安所設置 經緯, 慰安所所在地, 숫자, 慰安婦 募集 方法, 募集對象, 慰安婦의 生活與件, 慰安婦에 대한 報酬 및 支拂 與否 등을 追加 調査하도록 日本政府에 要請하고 있다.

다음으로 後續措置에 대하여, 우리 政府는 앞으로 日本이 謝罪의 뜻을 充分히 나타낼 수 있는 誠意있는 措置를 취하도록 促求할 것이다. 挺身隊問題는 過去 日本의 植民統治에서 가장 어두웠던 부분이라는 점에 비추어, 日本이 이러한 過去史에 대한 올바른 認識과 反省의 土臺위에서, 그에 相應하는 應分の 措置를 主導的

으로 취하는 것이야말로 建設的인 韓,日關係의 構築을 위해 매우 重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過程에서 우리 政府로서도 自體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檢討함과 아울러 各界의 意見을 收斂해 가면서 徹底히 對處해갈 것이다.

또한, 자라나는 世代들에게 어두웠던 過去에 대한 올바른 認識을 갖고 밝은 未來의 兩國關係를 가꾸어갈 수 있도록 日本 歷史敎科書에 올바르게 記述되어 各級, 學校 現場에서 敎育하도록 努力해 갈 것이다.

이러한 徹底한 眞相糾明 및 後續措置의 問題를 계속 協議하기 위해, 우리 政府는 지난 1.24. 設置되어 當初 6月末까지 運營하기로 되어있던 挺身隊實務對策班을 暫定的으로 今年末까지 延長 運營하기로 하였다.

第2部

日帝下 軍隊慰安婦 實態調查結果

이 보고서는 구 일본군의 문서자료, 미군아 위안부와 일본군 포로를
심문하여 작성한 심문조서, 오끼나와 미군정당국의 활동보고서, 피해
자의 증언 및 관련 체험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그간의 조사과정에서 위안부전체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추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이 보고서를 기초로 위안부문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하여 보다
철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軍隊慰安所の設置

가. 軍隊慰安婦의 定義

日本の國語辭典「廣辭苑」은 “慰安婦”의 項에 “戰地の 部隊를 隨行하여 將兵을 慰安한 女子”라고 定義하고 있다.

좀 더 事實적으로 定義한다면 “慰安婦”는 “戰地の 部隊를 隨行하여 將兵을 性的으로 慰安한 女子”이다.

“慰安婦”는 주로 軍隊를 위한 慰安婦, 즉 軍隊慰安婦를 가리키나, 주로 軍施設 建設, 空襲으로 파괴된 空港, 滑走路 등의 改修, 聖蹟 建設, 嶺山 등에 투입된 勞務者(주로 韓國으로부터 徵用된 勞務者)⁽¹⁾⁽²⁾를 위한 慰安婦와 慰安所의 例도 있다.

나. 軍隊慰安所 設置의 背景

(시베리아 出兵)

日本軍은 1918年 8月 시베리아 出兵을 宣稱하고 新生 소비에트政府에 軍事的 干涉을 開始하였다. 當時 駐屯地 및 戰場에서 러시아 女性에 대한 日本軍의 強姦事件이 頻發하여 性病이 蔓延

하였다.性病의 단원은 軍部隊의作戰能力을 크게 低下시켰으며,
그후 日本軍 幹部에서 重要な 敎訓 즉 “戰訓”이 되었다.⁽³⁾⁽⁴⁾

(上海事變)

日本軍은 滿洲侵略後 1932年 1月 滿洲로부터 列強의 注意를
돌리기 위해 上海에서 日本人 居留民 右翼分子와 中國官憲이 衝突하도록 策劃하여 同月 28日 日本軍과 中國軍사이에 戰鬪가 開始되었다. (第1次 上海事變)

이때 日本軍 兵士에 의한 強姦事件이 多發하였고, 岡村寧次 中將은 나가사키縣 知事에게 軍隊慰安婦 招致를 위한 協調를 要請하였다.

後의 資料 中將의 記錄에는, 「옛날의 戰役時代에는 慰安婦들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나 自身이 무고하지만 慰安婦의 創設者이다. 昭和 7年 上海 事變時 2, 3件의 強姦事件이 發生하였기 때문에, 派遣軍 參謀部長이었던 나는 同地의 海軍을 본따, 나가사키縣 知事에게 要請하여 慰安婦團을 불러, 그후 強姦罪가 전혀 없어졌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다. 현재의 本 兵團은 거의 全部가 慰安婦團을

隨行시켜 兵站의 一分隊로 되어 있는 형편이다. 第6師團같은 것은 慰安婦團을 同行시키면서도 強姦罪가 끊이지 않는 형편이다」라고 쓰여있다. (稻葉正夫編 「岡村寧次 大將 資料」)⁽⁵⁾

(南京大虐殺)

1937.7.7. 蘆溝橋事變을 계기로 日本과 中國은 全面 戰爭에 突入하고(中日 戰爭), 日本軍은 同年 12月 13日 南京을 占領하였다. 南京占領後 數週間 日本軍은 수많은 民間人을 虐殺하고(30萬 虐殺이라고 말해짐), 女性에 대한 強姦·殺人을 恣行하였다.

日本軍은 當初 短期戰을 豫想하였으나 國民黨政府는 首都를 重慶으로 옮기고 頑저한 抗戰態勢을 갖추자 戰爭은 長期戰化하고 戰線은 擴大되었다.

被占領地 女性에 대한 強姦은 現地住民의 激烈한 反抗을 招來했고, 日本軍의 占領政策에 격지 않은 支障을 가져왔다.

上記와 같은 狀況에서 軍隊에 의한 強姦 豫防, 軍隊의 亂暴化 豫防, 性病豫防을 위해 本格的으로 軍隊慰安婦政策이 採擧되기에

* 여기서 “2, 3건”이라는 것은 축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르렀다. 즉 日本軍은 上記 目的을 위해 軍隊을 위한 賣買券에
軍隊가 직접 全面的으로 介入하여 철저하게 管理할 수 있도록
歷史上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軍隊專屬의 慰安婦集團을 創
設하게 된 것이다.

軍이 慰安所가 必要한 理由를 詳細히 說明하고 慰安所設置를
指示한 文書가 日本 中央大教授 吉見義明에 의해 92年 1月初 日
本防衛廳 防衛研究所 圖書館에서 發見되었다.

同 文書는 北支那方面軍參謀長 岡部直三郎 中將이 方面軍의
各部隊에 指示한 通牒의 寫本으로서, 廣島에서 편성된 歩兵 第9
여단의 1933年 7月分「陣中三誌」의 27日字 日誌에 들어있는 것의
一部를 引用한다. (參考資料 5)

方軍參二營 第一六一號

軍人, 軍대의 對住民行爲에 對한 注意의 件 通牒

昭和 十三年 六月 二十七日

北支那方面軍參謀長 岡部直三郎

一. 軍 駐在지역내의 治安은 徐州會戰의 結果 好轉되었다고 보이나 최근에

이르러 산동성 방면에 交通線의 파괴가 다시 빈발하고 또 北部 京漢線
西方地區 共產黨의 활동은 북경북방지구를 거쳐 중령의 防化지역인
冀東 방면에 까지 확대되는 등 다시 역전의 情勢을 보이고 治安회복의
전도가 실로 難矣.

二. 治安회복의 진척이 지지부진한 주 원인은 후방안경의 임무를 띤 병력이
부족한데 있는 것은 물론이나, 한편 軍人 및 軍대의 주인에 대한 불법
행위가 주민의 원한을 사고 反抗의식을 불러일으켜 共產抗日系分組의
인중선동의 구실이 되어 治安工作에 중대한 影響을 미침, 각종 정보에
의하면 이러한 감렬한 反抗의식을 격화시키는 原因은 각지에서 일본군인의
강간사건이 널리 알려져 예상외의 심각한 反抗감정을 養成시키고 있다고
함.

三. 山東으로부터 河南, 河北 南部 등지에 있는 紅槍會, 大刀會 및 이와 유사한
지휘단체는 이전부터 軍대의 약탈, 강간행위에 대해 치열하게 反抗했으며,
특히 강간에 대해서는 각지의 주민이 들고 일어나 죽음으로써 報復하는
것이 보통이며(昭和 12年 10월 6일 方面軍으로부터 接獲한 紅槍會의 習性
参照), 따라서 각지에 침입하는 強간은 단순한 强暴의 罪에 그치지
않고 治安을 회복 軍全數의 작전행동을 支拂하여, 국가에 禍를 끼치는
중대한 反역행위라고 해타하여 부하통솔의 책임이 있는지는 國軍, 國가를
위해 肅청마속하여 타인을 威嚇시켜 이러한 행위의 재발을 根絶시켜야
하며, 만약 이를 不問에 붙이는 지휘관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不忠의
罪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四. 이외 같이 군인 개인의 행위를 엄중 취재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성적위안의 설비를 갖추어 성비가 없어 본의 아니게 발생하는 바를 어기는 자가 있지 않도록 할이 필요하다.

五. 이외에 토벌부대가 전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적병이 존재한다하여 혹은 주민들의 거주지 부근의 교통을 비적이 파괴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의 기옥을 소각하는 것 같은 행위는 전혀 무고한 주민을 자포자기에 빠뜨려 비적이게 가담시키는 길로써 적으로 주민 거주지의 소산을 엄금해야 함. 최근 각 유격부대는 縣政府를 만들어 상당히 조직적인 행정을 실시하는 것이 있어 토벌부대의 행위로부터 주민을 비호하는 태도로 나오기 때문에 주민은 일본군보다도 反共産黨 유격부대에 호감을 갖게 이르렀음.

六. 前述의 諸項은 종리 누누히 注意시켰으나, 특히 實行部隊인 中隊以下の 行爲가 철저치 못한 감이 있는 바, 此項에는 특히 各軍部隊에서의 徹저를 기해 確實必罰로써 임하도록 하여 徹底 通達함.

또한 1938. 12. 10에 第2軍司令部가 作成한 「第二軍狀況概要」의 「第四 漢口 및 漢陽 경비」에 다음과 같은 一節이 있다. (當時 第2軍은 13만 4천명의 兵力을 갖고 軍司令部는 東久邇宮稔彦王이었다)

三. 警備사령관은 軍紀風紀의 유지, 警備는 물론, 防務, 위생, 防犯, 防火, 防賊 등 광범위한 군대의 內務를 엄격히 처리하여 皇軍 本營의 規程을 遵守하고

위신을 尊重함에 尤加 注意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各隊에 대해 그 各요를 指導함.

(중간생략)

(二) 外出, 防犯

외출은 경비제일주의에 기초하여 당분간 嚴禁되출, 慰安소출을 위한 外출이외에는 外출을 인정하지 않음. 慰安소는 11월 25일부터 開設하여 입장권제도에 의해 入場을 방지하고 이로써 皇軍의 眼目을 守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어, 此로써 소기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 것으로 示됨.

日本軍은 武漢收降後, 第2軍 司令部가 11월 3日 漢口에 入城하여 各師團으로부터 選拔한 步兵 約 4個 大隊에 漢口, 漢陽의 警備 任務를 맡겼다.

當時 中支那派遣軍이 가장 憂慮한 事態는 약 1年前의 南京大屠殺과 같은 一大 不祥事가 새로 占領한 武漢에서도 일어날 可能性이었다.

敵美의 新聞, 通信社 등의 特派員은 이 점에 注目하여 待機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同軍에는 突入直前に “특히 防犯, 防火, 防賊 등의 絶無를 期할것을 要함”이라는 軍參謀長의 指示가 내려졌다 (防務廳 陸軍部, 「支那事變 陸軍作戰(2)」).

제2군도 漢口, 漢陽 警備時 軍인이 자유로이 市街地에 外出하면 비슷한 不法行爲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上官에 의한 引率外出과 慰安所出入以外の 外出을 禁止하였으며, 慰安所⁽⁶⁾를 開設하여 強姦事件을 防止하려고 했다.

다. 初期의 代表的 慰安所

(上海의 陸軍娛樂所)

前述한 바와 같이, 岡村 中將의 記錄에서 보이는 것 처럼, 1932年-第1次 上海事變時부터 軍隊慰安所가 이미 開設되었으나, 南京大屠殺事件以後 本格的으로 軍隊慰安所政策이 採擇되면서 생긴 代表的 慰安所가 上海에 設置된 陸軍娛樂所이다. “慰安所”라는 名稱 以外에도 “陸軍娛樂所”, “軍人會館”, “軍人俱樂部” 등의 名稱도 使用되었다.

藤生徹男氏는 九州大學 醫學部를卒業한 產婦人科 醫師였으며, 당시 軍에 召集되어 軍醫 少尉로서 第十一軍 兵站病院에 配屬되어 있던중, 1938年 1月頃 「藤生 軍醫는 곧 開設되는 陸軍娛樂所를 위해 目下 其美路沙徑小學校에 待機中인 婦女子 百餘名의 身體檢査를 하여야 함」이라는 兵站司令部의 命令을 받았다.

同人是 이 身體檢査를 實施한 後 「花柳病의 積極的 豫防法」이라는 報告書를 作成하게 된다. (同 報告書는 후에 韓國人 女性과 관련하여 軍隊慰安所政策에 큰 影響을 미치게 된 것으로 推定된다)

陸軍娛樂所는 軍工路 가까운 場家宅에 세워졌다. 同 慰安所는 木造바라크 10棟 정도로 各 棟은 4疊半정도의 土間이라고 하는 小室 10개로 되어있고, 管理棟과 함께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였다. 各室은 나무관자문에 방안에는 베드 하나가 놓여 있고, 가로 30cm, 세로 50cm의 窓이 하나 있는 구조였다. 窓의 下部 2/3 정도는 鐵網 유리로 되어 있고, 나머지 上部 1/3은 투명유리로 되어 있었다. 利用規則인 「陸軍娛樂所規則」이 揭示되어 있었다.

그후 1個月 정도후 軍은 民間業者에게 委託하여 敎習所의 娛樂所를 江灣鎮에 開設하도록 하였다.

이후 軍이 慰安所를 直接 經營하기 보다는 經營은 賣春業者에게 맡기고 軍은 慰安所의 衛生管理 및 規律, 其他를 監督하며, 業者는 軍隊의 許可를 얻어 慰安所를 開設하는 形態가

(8)
一般的으로 되었다. 그러나 策者는 慰安婦의 一次의 人的管理
程度의 役割을 委託받은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별 지>

華南의 廣東을 中心으로 駐屯하고 있던 第21軍(波桑團 :
당시 兵力은 약 5만 정도로 推定됨) 司令部(司令官 : 安藤
利吉 中將)가 陸軍省 등에 提出한 「戰時旬報(後方關係)」
(1939年 4月 中旬號)의 「(六) 其他」의 第2節 「慰安所の狀況」
을 引用한다.

위안소의 상황

1. 위안소는 소관경비대장 및 헌병대의 감독하에 경비지구내 정교이하를
위해 개설시켰음.
2. 근래 각종 위안설비(식당, 키치, 요리집, 기타)의 증가와 함께 군 위
안소는 중차 석마의 징후를 보임.
3. 현재 승업부녀의 수는 대략 1,000명 내외로 군이 통제하는 지는 약
850명과 각 부대 항로로부터 떨어진 자 약 150명 정도로 추정됨.
상기 외에 제1선에서 위안소설치가 곤란한 곳은 철지의 자를 사용하는
이도 약간 있음.
4. 위안소의 배당 및 위생상태 제청은 별지와 같음.

구 분	軍 庫 부 대	久 納 兵 團	浜 本 兵 團	博 多 부 대	佛 山 支 隊	飯 田 支 隊	합 계
장 소	市 內	廣 東 市 北 部	廣 東 市 北 部	廣 東 市 北 部	佛 山 市 北 部	佛 山 市 北 部	
인 원 수	159	222	120	122	41	180	850
衛 生 現 狀	25%	1%	10%	1%	3%		

※ 비교 : 위는 헌병부녀지의 지면을 개상함. 이와에,三水,九江,南昌,
龍巖,石龍 등에도 설치되어 있으나, 극히 소수이며 상세사항은
별명함.

2. 慰安婦 募集

가. 募集 對象

1932年 上海事變時 최초로 軍隊慰安所를 設置한 때에는 軍部隊 周邊의 娼館 혹은 賣春業者에게 委託하여 日本의 오사카 등지 에서 주로 職業 賣春女性에게 相當額의 前渡金을 支拂하고 募集 하였다.

그러나, 1937年 南京大虐殺事件 以後 軍이 本格的으로 軍隊慰安婦 政策을 採擇하자 上記와 같이 過去 賣春의 經驗이 있는 女子들은 性病을 傳染시킬 憂慮가 있는 등 軍隊慰安婦로서 바라지 하지 않다는 점이 認識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을 指摘한 것이 衛生隊男 軍醫 少尉의 報告書 「花柳病과 慰安婦에 관한 意見書」⁽⁹⁾와 安村光孝 軍醫 少佐의 「中國人 友娼에 對해서 의 調査報告」⁽¹⁰⁾이다. 同 報告書들은 慰安婦의 實態를 調査하고 戰力喪失의 原因이 되는 花柳病의 豫防과 慰安婦 資質 向上을 主張하였다.

특히 產生는 慰安婦는 年齡이 젊을수록 좋으며 内地人의 大部

은 過去 數年間 賣淫이 從事한 者들 뿐으로 性病에 感染되었을 可能성이 크나, 半島人은 年齡이 어리고 初心者가 大部分인 점이 흥미로운 對照를 이룬다고 指摘하였다.

上記 理由와 1933年 以後 大量의 慰安婦 需要 및 日本에서의 慰安婦 大量 募集에 따른 社會問題 惹起의 憂慮때문에, 軍部와 業者는 慰安婦를 당시 日本의 植民統治下에 있던 韓國으로부터 充員하리 했을 것으로 推定된다.

나. 募集 方法

(詐術 혹은 威壓的 雰囲気에 의한 方法)

대체로 1933년까지는 주로 都市地域에서 女工募集, 食堂從業員 募集 등의 典型的인 人身賣買 手法으로 募集한 것으로 보인다.

1933年 以後 1940年頃까지는 業者가 軍의 許可下에 憲兵, 警察, 面長 등의 도움을 얻어 주로 貧困한 農村의 農夫의 딸들을 特地 看護婦, 軍看護補助員募集 등의 名目으로 모여 募集한 것으로 보이며, 이때 警官이나 面長이 業者와 同行함으로써, 威壓的인 雰囲気을 만들거나 犧牲者들이 業者의 딸을 쉽게 받도록 단든 것

* 삼CO할머니는 소학교 5년때(당시 16세) 일본의 지도이 컷꽃이 아닌 나뭇꽃을 수놓았다 하여 경찰서에 끌려가 추방과 고문을 당하고 거절하이 정신차려보니 후꾸오까리 어떤 한부대있다고 증언함.

으로 보인다.

1938年 3月 陸軍省 兵務局 兵務課가 起案한 文書「軍慰安所
(15)
從業婦 등 募集에 관한 件」을 引用한다.

陸支密

副官으로부터 北支方面軍 및 中支派遣軍 참모장 통첩안

지니시반지에 있어서의 귀환소 설치를 위해 내지에서 증검부 등을 모집할
때 군부양해 등의 명의를 이용하기 때문에 군의 위신을 저해하고 또 一般民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와 종군기자, 위문자 등으로 하여금 통제받지 않고
모집하도록 하여 사회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혹은 모집에 임하는 자의
인신이 적절치 못하여 모집방법이 유괴와 비슷하기 때문에 경찰당국의 검거
위조를 받는 자가 있는 등 주의를 요할 점이 적지 않은 바, 장래 모집에는 파견군이
봉착하여 이에 임하는 민들의 신경을 주로 적절히 하고, 그 실시에는 관계지방의
현병 및 경찰당국과의 연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군의 威信 보상 및 사회문제상
遺漏없이 배려하도록 慎重 處置함.

陸支密 제745호 昭和 13년 3월 4일

이 문서에는, 梅津美治郎 陸軍次官 및 寺村均 兵務局長의 決裁
印자, 柳淵金宣一 高級副官의 決行指定印이 찍혀있으며 실제로
陸軍省의 副官通牒으로서 示達된 것이다.

이에 의하면, 1938年初에는 이미 派遣軍의 許可를 얻어 業者가
慰安婦를 募集하고 있었으며, 社會問題上 및 軍의 威信維持上 派
遣軍이 統制를 더욱 強化하고, 現地의 憲兵, 警察과 協力하여 用
意周到하게 實施하도록 指示하고 있다.

當時 日本의 末期의 植民統治下에 있던 韓國에서는 上記와 같은
難點이 쉽게 克服될 수 있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事實上 動員의 方法)

1941年 7月에 “關東軍 特別大演習”이 開始되어 8月初에 약 70
萬의 兵力이 北滿州 縣境 接境地帶에 집중되었다. 결국 蘇聯에 대한
作戰이 開始되기 直前에 取消되었으나, “關特演”의 動員計劃에는
“慰安婦의 動員”도 包含되어 있었으며, 慰安婦 動員을 위해 當時
關東軍司令部 參謀 第3科에 속해 있던 後方擔當參謀 栗善四郎
少佐가 朝鮮總督府 總務局에 慰安婦動員을 依頼하여 결국 8천명
정도를 動員하였다고 한다. (그 가운데에는 大連, 奉天 等地에서
賣春業에 從事하던 日本人 女性도 있었다.)

總督府는 道, 郡, 廳에 動員命令을 은밀히 下達하고 面長의 責任
(16)
下에 動員하도록 했고, 이 때 使用된 手法은 軍部隊에서의 雜役,

看護補助, 軍需工場 女工 등은 女子特殊軍屬 등이라고 소인 것으로
(17) (18)
推定된다.

(19)
("요시다 세이지"의 證言)

韓國 未婚女性를 慰安婦로 動員한 것은 新聞, 라디오에 報道되지
않도록하고 事實上 大規模로 官의 積極 介入하였으나, 隱密히 施
行하였다. 그러나 上記와 같이 募集, 動員된 未婚女性들이 慰安婦
生活를 한다는 사실이 곧 國內에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當時
戰線에 慰安婦가 있다는 事實을 말하던 流言蜚語가 該當하는
것이였다.

결국 1943年頃부터 慰安婦 動員에 上記와 같은 手法이 用하
여 되자, 19世紀 아프리카에서의 黑人奴隸사냥과 비슷한 手法의
사냥사냥으로 慰安婦를 充員하기도 했다.
(20) (21)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는 그의 自傳인 「나의 戰爭犯罪, 朝鮮人
強制連行」(1983, 三一書房) 第2章에서 이와 같은 狀況을 證言하고
있다.

* 1939년 하얼빈의 육군병원 勤務였던 일본인(73세)은 「육군군 여자특수군속부
무규정」이라는 규정으로 慰安부 慰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여기서
"여자특수군속"은 한국인 군내위안부를 가리킨다고 증언함. (支那慰安婦 110話,
1992.6.15. 明石書店)

다. 勤勞挺身隊와 慰安婦

日本은 太平洋戰爭 遂行에 따른 極심한 勞動力 不足을 겪게 되어
大規模의 人力動員을 實施하게 되고, 女子에 대해서도 動員을 實
施하였다. 이와 關聯한 日本政府의 主要 措置는 다음과 같다.

1943. 6. 2. 大日本 勞務報國會 創立

1943. 6. 25. 閣議, 學徒戰時動員體制確立 要綱 決定

7. 30. 閣議, 女子學徒 動員 決定

9. 23. 閣議, 17職種(販賣員, 賣店員, 出札係, 斗장, 理
髮師 등) 에의 男子 就業禁止 및 25歲 未滿의 女
子를 勤勞挺身隊로 動員할 것을 決定

1944. 8. 23. 學徒動員令, 女子挺身動員令 公布

日本은 대체로 1941年頃부터 勤勞報國隊, 產業挺身隊 등 이름
으로 事實上 強制動員을 實施하였으며, 韓國內 혹은 日本內 軍需
工場 등에서의 使役을 위한 大量의 韓國女性 動員은 1943年頃부터
始作된 것으로 推定된다.

이와 같은 女性動員의 趣旨은 基本的으로 慰安婦調達과는 性格이

다른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이 勸募員 女性들(勸勞挺身隊)이 慰安婦로 되었을 可能性은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 引用한 요시다 세이지의 手記에 의하면, 西部軍司令部로부터
下達된 勞務勸募令書에 “皇軍 慰問 朝鮮人 女子挺身隊 2百名”
이라는 名稱이 使用 되었으며, 慰安婦를 募集할 時에 反文明的 犯
罪性格의 募集行爲를 開墮하기 위해 通常 “挺身隊”라는 名稱이
使用되었을 可能性이 있다.

또 當時 軍隊慰安婦에 關한 事項은 極秘이었고, 이에 關한 말을
하는 것은 流言蜚語罪로 되는 狀況이었기 때문에 一般的으로 當時
韓國民은 “挺身隊”라는 單語로 軍隊慰安婦를 理解하였을 것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戰爭政策 遂行에 따라 취해진 全國勸募 措置의 一環으로
勸募된 “女子勸勞挺身隊”와 “慰安婦”는 基本的으로 關係가 없는
것이다. 國民學生 勸勞挺身隊도 “慰安婦”와는 無關係한 것이다.

다만 都市나 日本의 工場 또는 工場周邊 地域에서 韓國女性을
詐術的 方法이나 사람사냥의 手法, 혹은 工場管理者의 協調로 慰
安婦로 끌어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는 원래

女子勸勞挺身隊員이나 國民學校 勸勞挺身隊員이었던 사람이 包
容되었을 可能性은 있다.

3. 檢送方法

가. 集 結

人身賣買과 같은 詐術的 手法에 의한 경우에는 業者가 旅館 같은
곳에 監禁시켰다가 숫자를 채워서 대리고 떠났다.⁽²²⁾

中日戰爭以後, “關特演”(關東軍 特別大演習)前後와 같이 事
實上 大量勸募 때에는 警察, 軍隊, 官의 有機的 協調下에 비어있는
倉庫, 休業中인 料亭建物, 休業中인 百貨店建物, 軍部隊의 倉庫 등에
集合시켰다가 檢送하였고, 集結地는 주로 서울, 釜山이었다.⁽²³⁾

* 윤○○ 할머니와 강○○ 할머니의 예 : 윤○○ 할머니는 12세 때(1942) 사
람사냥의 수법에 의해 끌려가 공장에서 일하다 15세 때 慰安부로 끌려감.
강○○ 할머니는 국민학교 근로성원으로 끌려갔다가 매가 고가 공장으로
직을 것을 찾았다고 나왔다가 慰安부로 끌려감.

나. 輸 送

輸送은 軍兵始部의 責任下에 軍用貨物列車 및 軍用輸送船으로 目的地에 輸送되었다. ⁽²⁵⁾

서울로부터는 北上하는 軍用貨物列車에 의해 滿洲, 中國으로 輸送되었고, 釜山, 木浦, 仁川 등지로부터는 軍用輸送船에 의해 시모노세키, 구와 等地를 거쳐 上海, 항주, 비마, 필리핀, 오키나와, 수마트라, 라바울, 트럭실 등 其他 南洋羣島로 輸送되었다. ^{(26) (27) (28) (29)}

輸送되는 業者와 慰安婦는 “貨物”로 取扱되었다. ⁽³⁰⁾

軍은 業者가 慰安婦를 引率하여 目的地에 到着할 때까지 軍部隊, 飮糧, 醫藥 등의 便宜를 提供하도록 要請하는 證明書와 通行證을 發給하였다. ⁽³¹⁾

* 일본은 격렬 개전 이후 1942년부터 미군주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는 와중에 남양군도 각지역도 위안부를 보냈다. 위안부들은 수송되는 도중 미군의 폭격이나 어뢰에 의해 수송선이 격침되면서 죽은 경우가 많았다. (1992.6월호 宣傳研究誌에 수록된 近藤 宏의 증언)

4. 配 置

一次 目的地에 到着하면 女子 등을 관고은 業者가 戰線部隊로 直行하거나, 적당한 숫자로 나누어 各地域의 砲隊, 大隊 등 單位部隊의 慰安所에 配置되었다. ⁽³²⁾ 아무리 奧地일지라도 慰安婦가 配置되지 않은 部隊는 거의 없었다. 滿洲에서는 “赤峯”이라는 奧地에까지 慰安所가 設置되었다. 이와 關聯하여 김일면氏의 「軍隊慰安婦」中 一部를 引用한다. ⁽³³⁾

위안부들은 기차에 흔들리고, 트럭으로 운반되어, 다시 환포의 광야를 마차에 흔들거리며 어나면 길을 찾아 왔기 때문에 흥언지로 얼굴은 검둥이었다고 한다. (당시 권동군 소대장 不暇韓, 육상자위대전사실 근무)

비마 같은 곳에서는 日本人 慰安婦들은 興件이 나온 後方에 주로 있고 韓國人 慰安婦들은 보다 一線쪽에 많았다. ⁽³⁴⁾

現地の 駐屯地에 到着하면 炊事係, 衛生兵이나 酒保係의 上사 혹은 會計少尉의 指揮監督아나 들어간다.

當時 韓國內에도 大邱, 彰島 等地에 日本軍의 慰安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1 韓境警備生자유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일장부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 보상 청구소송 제1차공판(동경지방법소, 92.6.1)에서 “가네마 기마포”라는 이름으로 공판정에 나온 권 위안부는 권진이 도착하니 군용지프, 트럭, 마차가 대기하고 있었다고 증언

*2 1944년 당시 경북도청 군포동권과 권호근 군무 유○○氏 증언(세계일보 92.1.19과 18면), 유○○氏(55세, 여, 경남음산사 남구) 증언(경향신문 92.6.8과 22면)

*1.2
5. 慰安所の管理

가. 慰安所 建物

慰安所建物は軍に作られた。一般的으로 幕舎와 같은 建物を
것거나, 民間人의 집을 빌리거나(中國, 오기나와 一部) 심지어
길을 慰安所(카닐라)로 使用하기도 했다.

南洋群島와 같이 資材를 구하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設計하여
생태진 깃수에 따라 資材를 미리 지단하여 輸送하 와서 組立하기도
(35)
했다.

中國, 滿洲 等地에서는 食糧, 담배 등 兵站補給品을 輸送하는
車輛이 慰安婦도 함께 싣고 奥地에 派遣된 分遣隊를 巡廻하기도
하였다.

- *1. 위안소, 위안부 및 기타 유동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은 전할 부대장의 권한(참고자료 2) 혹은 부대 부관의 권한(산 제3475부대 내부규정)이었다. 특히 참고자료 2에는 위안소관련 관리 감독규칙, 방식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 *2. 참고자료 18 '서러레스 민정부 제2 부원단원에 관한 건 보고' 중에는 '남부 서러레스 태음서술자 권한 조사보고'가 포함되어 있는 데, 중 자료에는 위안소 개설 등에 관한 허가권자가 민정부장관이고 천만리인 위안소 관리 감독업무는 정부부 제1차장 및 제3차장이 행하며, 위안부모집, 교통거약 등의 업무는 그 밑의 민정부 속하 혹은 기업단원이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동 조사보고 보고관계는 위안소관련서류 일체를 소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管理規則

軍이 管理規則을 만들어 慰安所를 管理, 監督하였다. 中國 常州에
駐屯하고 있던 獨立攻城重砲兵 第2大隊(大隊長 : 万波 少佐)의
(36) (37)
內務規定(1938.3.16.作成) 中 제9장 慰安所 使用規定을 引用한다.

제9장 위안소 사용규정

제59 방 절

總則慰安의 방법을 强구하여 근기수중에 一助가 되도록 함에 있
다.

제60 절 나

위안소는 日產倉庫 남측 園地內에 설치하여, 日產倉庫 부속건물
및 下士官, 兵營과 구분한다.

下士官, 兵의 出入口는 南門 表門으로 한다.

위생상에 관하여 嚴正한 消毒設備을 설치한다.

각대의 사용일자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로 부대	일요일
꽃병부대	월, 화요일
松村부대	수, 목요일
호미부대	토요일
阿知波부대	금요일
松田부대	일요일

기타 임시주둔 부대의 사용에 관하여는 별도로 지시한다.

제61 실시단가 및 시간

1. 하사관 병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2. 단 가

사용시간은 1인 1시간으로 하도록 한다.

支那人 一円 00銭

半島人 一円 50銭

内地人 二円 00銭

이상은 하사관 병으로 하고, 장교(준위 포함)는 배액으로 한다. (방독면 비치함)

제62 검 사

매주, 월요일 및 금요일로 하고 금요일을 定例檢診日로 한다.

검사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한다.

검사주임관은 제40전병원 군의관으로 하고, 본초여병병원 및 각 隊 군의관은 이를 보조하여 검사주임관은 그 결과를 제3형 부대에 통보한다.

제63 위안소 이용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안소내에서는 음주를 금한다.

2. 금욕지침 및 시간을 엄수한다.

3. 여자는 모두 성병감염자라고 생각하여 성병예방에 관해 단전을

기하도록 한다.

4. 영업자에 대해 난폭행위를 금한다.

5. 酒醉자는 출입을 금한다.

제64 잡 건

1. 영업자는 전다건을 손님으로 받아서는 안된다.

2. 영업자는 주출다과의 행동을 금한다.

3. 영업자는 특히 허락된 장소 이외에 외출을 금한다.

4. 영업자는 모두 검사의 결과 합격증을 소지한자에 한한다.

제65 감독책임

감독책임부대는 현병본진대로 한다.

제66 부가사항

1. 부대위안소는 육요일로 하고, 당일은 음력으로 부터 사용시간에

간부를 순환시킨다.

2. 위안소에 갈때는 각기마다 인솔해서 가도록 하여, 단 각반은 음

고기도 된다.

3. 매월 15일은 위안소의 공휴일로 한다.

* 영업자는 위안부를 가리킨.

다. 經營 및 管理監督

(經營者)

대체로 37年頃 내지 38年初까지는 軍이 直接 慰安所와 慰安婦를 管理한 것으로 보이나, 38年 以後부터는 形式的으로 經營은 業者에게 맡기는 形態를 취하여, 慰安婦의 募集 및 慰安婦와 같은 建物에 거거하면서 慰安婦와 주로 直接 對面하여 管理하는 것은 業者에게 맡겼다.

그러나 業者로서의 經營者의 役割은 慰安婦에 관한 軍隊의 指示事項을 徹底히 實行하는 者에 지나지 않았고 軍醫과 비슷하게 取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0) (41) (42)

業者는 軍의 許可가 있어야 慰安婦募集을 할 수 있었고, 慰安所 開設, 慰安所營業의 休廢業, 慰安婦의 숫자, 慰安婦의 歸還, 價格, 慰安婦와 業者間 收入分配, 營業時間 등 營業에 관한 거의 모든 事項이 軍에 의해 決定되었다. (43)

日本이 戰爭政策遂行을 위해 戰時統制經濟體制로 移行하고 人力總員을 위해 就業制限 및 遊休人力 統制管理을 施行함에 따라

賣春業은 急速히 衰退하지 않을 수 없기 되어, 賣春業者들은 戰線으로의 進出에 積極的이었다.

이러한 賣春業者는 多樣하이, 本來의 大規模 및 中,小規模의 日本人 賣春業者, 軍部隊周邊의 用進業者, 日本人 業者에게 배운 韓國人 業者, 中國人・臺灣人 業者가 있었고, 이 외에도 慰安所管理 關係 業務를 하다가 除隊한 下士官 내지 將校出身 業者, 慰安婦出身 業者들이 있었다.

(管理・監督)

衛生面에서의 管理는 軍醫部에서 擔當하였다. 定期的으로 檢診을 행하고, 性病感染者를 發見하던 各 部隊의 주변사령을 통하여 各隊에 通知하고, 그 慰安婦에 대해서는 營業停止措置를 취했다. (44) (45)

慰安所에 들어가는 兵士에게는 "돌격알면"이라는 콘증이 支給되고, 慰安所의 各室에는 過망간酸칼리의 水溶液이 備置되어 이 水溶液으로 씻도록 하였다.

(47)

慰安婦의 逃走防止, 慰安所 警備, 慰安所의 秩序維持는 憲兵隊 및 警備擔當 部隊가 擔當하였다. 이 외에도 매일 當直 將校가 巡察하였다. (48)

軍醫部에는 全身寫眞을 붙인 名簿가 備置되어 있고, 이의 複寫本이
(49)
慰安所에 保管되었다.

慰安所の 維持에 必要한 食糧, 燃料, 資材 등의 補給 및
(50)
慰安所收入의 管理와 關聯한 事項은 經理部가 擔當하였다.

라. 慰安婦의 生活與件

一般的으로 外出이 制限되었으며, 심지어 慰安婦의 散步時間 및
(51) (52)
散步區域이 制限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韓國으로부터 詐術的·半
強制的 動員手法에 의해 끌려온 女性들은 종종 脱出을 試圖한 것으로
보이며, 慰安婦에 대한 嚴重한 監視가 있었다. 慰安婦는 管理·監督을
(53)
擔當하는 部隊長의 許可가 없으면 指定한 地域을 離탈할 수 없었다.

都市地域의 慰安所는 生活用品 등의 購入이 比較的 容易 했을
것으로 보이나 農村地域 및 一線의 軍部隊 慰安所는 一般的으로
(54)
女性이 必要로 하는 用品의 購入이 어려웠을 것으로 推定된다.

(55) (56)
收入의 分配는 業者가 60% 정도를 차지하고 慰安婦가 40% 정
도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業者는 一般的으로 賣春業의
조수가 賣春婦를 搾取하는 手法으로 여러가지 名目을 붙여 收入을
(57)
가로챘다.

* 茂田千之助는 자신의 저서 「証言役者—ひかくに半代記」(叢書新書)에서, 1944
년 7월 新京(現 長春)에 있던 陸軍經理學校에 입학하였는데 동학교는 慰安婦의
管理에 대해서도 가르쳤다고 술회함. (史料研究 1992.6월호에 수록된 구 안부관련
증언집 참조)

* 陸軍省의 慰安婦生活者保護法 案. 부를 상대로 제기한 慰安婦生活 請求소송 제1차
공판(동경지방법판스, 92.6.1)에서 “가네다 기네코”라는 이름으로 출정한 권
위안부(72세)는, “공장이 아니라 군인들만 잔뜩 있는 곳으로 옮겨져 처음에
멘트르 잔다이란 땅에서 군인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총격으로 가슴을 찔려 30일간
의성소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이천읍(당시 17세)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매일
당했다”고 증언

慰安婦들의 收入에서 税金이 差除⁽⁵⁸⁾되었으며, 慰安婦들은 收入을 軍事郵便貯金⁽⁵⁹⁾의 形式으로 貯蓄하는 것도 可能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韓國人慰安婦가 收入을 現金의 形態로 손에 넣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軍票로 支拂받은 경우 日本의 敗戰에 의해 軍票는 쓸모없이 되었다.

또한 必要時에는 慰安婦들이 洗濯婦, 雜役婦, 看護補助 등으로도 活用되었다.

6. 移 動

軍部隊가 移動하면 그 部隊에 所屬되어 있던 慰安婦도 함께 移動⁽⁶⁰⁾⁽⁶¹⁾하였다.

특히 中國에 駐屯하던 部隊가 비마地域으로 移動하면서 所屬慰安所의 慰安婦 多數가 部隊를 따라 비마로 移動한 것으로 보인다.

7. 戰爭末期의 狀況

가. 空襲時 狀況

太平洋戰爭 末期에 이르러 주로 美軍에 의해 空襲이 頻하여졌으며, 空襲으로 인해 慰安婦 死亡者가 相當數 있었을 것으로 推定된다.⁽⁶²⁾

慰安婦들은 戰爭말까지 이르러 空襲을 피하기 위해 軍施設의 塹壕나 窟內의 陣地로 받아들여진 例가 있다.⁽⁶³⁾⁽⁶⁴⁾

이러한 狀況에서는 慰安婦의 役割뿐 아니라, 雜役·看護 등의 使役도 한 것으로 보인다.

⁽⁶⁵⁾⁽⁶⁶⁾
나. 日本軍 敗北時 狀況

日本軍은 敗走前에 從軍看護婦와 慰安婦를 미리 疎開시킨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疎開對象은 주로 日本人이었으며, 韓國人慰安婦 들어가는 이러한 撤收事實을 알리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버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南西太平洋의 群島地域 戰線에서는 大部分의 慰安婦가 日本軍에 의해 버림받고 치열한 戰鬪의 渦中에서 죽거나, 日本軍과 함께 혹은 스스로 擡收하는 도중 長時間에 걸친 行軍과 飢渴, 現地人 게릴라部隊에 의한 攻擊 등으로 死亡者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닐라에서는 日本軍이 敗走하는 狀況에서 필리핀인 게릴라와 民間人들에 의한 日本人虐殺의 渦中에 韓國人 慰安婦들도 大部分 被殺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事例는 以外에도 많았을 것으로 推定된다.

인도·버마地域 美軍 심리전담 審問調書中 과의 關係한 내용을 引用한다.

주역과 체포

위안부들의 구획과 마지막으로 잡히게 되는 경위에 대한 진술이 다소 명확치 않고 서로 엇갈리는 점이 있으나, 여러가지 보고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7월

31일 밤 미트키나(Mitkyina)에 있는 3개 위안소의 위안부 63명과 위안소 경호자들은 미트키나로부터 철수를 개시했다. 위안부들은 행간에 군정색의 군복을 입었다. 그들은 10척의 작은 배에 나누타고 오리와디강을 건넜다. 주둔부대의 대부분은 여며 미트키나로부터 철수하였고 부상병과 병에 걸린 병사들만 남게 됐다. 그들은 와잉따우(Waingmaw) 북쪽 데 상륙하여 8.4일까지 밀림에 있다가 쇠각하는 군대의 뒤를 쫓아 걷기 시작했다. 8.7일에 그들은 병사들과 다루고 곁행이 나뉘었다. 한국인 위안부들은 3시간후에 군인들을 따라 오도록 지시받았으나, 그들은 제방에서 군인들의 진호를 볼수 없었고, 강을 건널 수단도 없게 됐다. 그들은 8.10일까지 근처의 오두막에 있다가 영국군 장교가 지휘하는 카친족 병사들에 의해 붙잡혔다. 그들은 미트키나로 호송되어 Ledo Stockade 캠프에서 심문을 받았다. 이 심문내용이 이 조서의 대부분이다.

(57)
케마炮臺 戰線으로부터 千辛萬苦 끝에 태국, 베트남으로 遷移하여 尼着하지 전 사람도 極少數있었다.

8. 聯合軍(주르 美軍)에 의한 現地占領以後 狀況

가. 聯合軍에 의한 收容

인도·버마地域 美軍 심리전담의 審問을 받은 軍慰安婦는 撤收中 불잡혀 美軍에 收容된 경우이다.

몇몇 地域에서는 聯合軍이 의한 占領後 韓國人들이 「朝鮮人會」 혹은 「高麗人會」를 結成하여 自救策을 講究하였으며, 이들은 軍

政當局의 收容所에 收容되었다가 軍政當局이 주선하는 輸送船으로 歸還하였고, 이러한 「朝鮮人會」에 慰安婦도 包含되어 있는 경우가 (58) (59) 많았다.

나. 歸還

戰爭말까지에 살아 남아 前述한 韓國人同胞團體로 組織된 경우에는 慰安婦 大部分이 學徒兵, 徵兵者, 徵用者, 其他 民間人과 함께 軍政當局의 收容所에 收容되어 있다가 聯合軍司令部 및 軍政當局의 措置로 歸還할 수 있었다.

오끼나와에서는 류큐列島地域 및 오끼나와의 韓國人慰安婦가 治安에 問題가 되어 이들을 모아 韓國에 歸還시켰음을 報告하는 內容의 오끼나와 軍政當局의 文書가 있다. (70) (71)

中國 等地로부터는 上海, 杭州 등으로 모여 軍政當局이 周旋한 輸送船으로 歸還한 例가 있으며, 滿洲 等地에서는 陸路로 歸還했을 것이다. (72)

全般的으로 韓國人 慰安婦들은 言語疏通의 問題와 女子인 點 때문에 歸還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73)
差配心으로 인해 韓國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끼나와, 태국, 베트남, 대만 等地에 남은 例도 相當數 있을 것으로 推定된다.
(74)
一部는 日本으로 갔다.

다. 歸還後 狀態

(75)
韓國에 돌아온 후에도 大部分은 故郷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自身의 前歷을 숨기지 않을 수 없었다. 結婚하여도 대부분 姓假이 不可能하였고 結婚生活이 不幸한 結果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慰安婦 大部分은 精神的, 肉體的 苦痛을 겪으며 貧寒한 生活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인다.

* 대령양전정화생계유조부가 중심이 되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피의 보상 청구소송의 제1차공판(92.6.1)에서, 전 중군위안부 한사감(724)은 가말을 쓰고, 천금라스를 끼고, 이빨도 착안부상족을 팔뚝의 '가네다 기모노'라는 이름으로 공판장이 나와 명목 고등을 있기 위해 아편을 복용하여 "꿈에 섞여갔다"고 증언했다. 이 꿈이라는 현재 현유 한 장일이 다들부생달로 인명하고 있다고 했다.

9. 結 語

日本軍은 慰安婦 政策의 發案, 慰安所設置, 慰安婦募集, 輸送, 管理 등 모든 면에 걸쳐 全面的으로 介入하였다. 마지막으로 戰爭末期에 이르러서는 慰安婦를 버렸다. 戰場에서의 비참한 죽음을 면한 慰安婦들은 疾病으로 인한 肉體的 苦痛과 精神的 苦痛에 시달리며 自身の 眞實을 숨기고 不幸한 삶을 이어가고 죽어갔다.

日本軍은 性病과 強姦을 防止하여 占領地或의 治安과 戰力을 維持하기 위해 慰安婦政策을 實施하였고, 慰安婦는 하나의 人間으로서 認識되지 않았다. 이러한 前無後無한 反文明的 犯罪가 순전히 軍隊의 戰力維持라는 技能的目的을 위해 日本에 의해 遂行되었고 最大의 被害者는 당시 韓國의 純眞無垢한 未婚女學生과 一學 既婚의 젊은女性들이었다. 慰安婦問題는 日本의 殖民統治로 우리 民族이 겪은 受難中 가장 어두운 面을 보여주는 것이다.

註

1. 軍隊慰安所の設置

(1) 아사히新聞 92.4.21日 夕刊 1面 報道 :

1942년 당시 일본기획원이 중국인을 징용하여 慰安所로 투입하려는 계획이 慰安所도 함께 설치하는 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동계획 관련 문서 "華人 勞働者內爲移入에 관한 건"이 일본 국립공문서관(통경도 차오다구)에서 발견되었음

(2) 前 慰安婦 沈○○ 할머니의 證言

(3) 千田 著, 從軍慰安婦, p.21-30. 參照

(4) 文藝春秋 92.3月號 다나카 아키라 拓殖大教授와 사토 가즈미

月刊現代 韓國의 主權의 暴行 :

(중간생략)

○사료 : 종군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하며, 그것이 군과 불가분의 것이었다는 것도 틀림없다. 종군위안부라는 것은 시베리아출병후 일본군이 만든 제도이다. 시베리아에 출병한 군대의 3분의 1 정도가 당시 러시아여성과의 접촉에 의해서 성병에 걸려 무용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당황한 군이 현지 여성과의 트러블 회피

(중간생략)

또한 「조선인 위안부의 일본인」(1977, 新人物往來社)의 1책50-1책52
쪽 15항 조선인 여자정신대 형욱에서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소화 19년(1944) 나는 조선인 여자정신대의 동원명령서를 露軍 노정
과의 中村주사로부터 받았다. 中村주사는 서류함에서 동원명령서를 꺼내
나에게 건네주며 서로 이같이 말을 주고받았다.

조선인만의 여자정신대입니다. 南支(남부중국)의 육군부대에 파견하는
데 기일은 4월 10일입니다(그해 8월이후에만 露軍總기 동원되었다는
안교수의 주장과 비교된다).

황군위문의 군로통사입니다. (중략) 조선총독부의 여자정신대는 대륙의
병사들로부터 공판이 좋은 모양입니다.

동원명령서

육군 ○○부대의 요청에 따라 좌기와 같이 노무동원을 명함.

소화 19년(1944) 4월 3일

- 황군위문 조선인 여자정신대 2백명
- 연령 13세이상 35세미만 (7촌자도 가함. 관, 公산주는 제외)
- 신체 강건(성병검진을 받음. 진단서를 요청)
- 기간 1년 (지원으로 연장도 됨)
- 급여 1개월 30원, 준비금으로 전도금 20원, 숙사, 식량, 의복 등 지급함.
- 집합 下羅市 細江町 下羅세공청사 앞
- 수송지휘 육군 ○○부대 측막 북촌내 뚝

(이하생략)

(21) 吉田清治 著, 「나의 戦争犯罪, 朝鮮人 強制連行」(1983, 三

一書房)의 顔語 「나는 조선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였다」(1989,

창계연구소) 参照

(22) 오시다 세이지 著, 「나의 戦争犯罪, 朝鮮人 強制連行」 参照

3. 檢送方法

(23) 前 慰安婦들의 證言

(24) 오시다 세이지, 「나는 조선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였다」 参照

(25) 前 慰安婦들의 證言

(26) 千田, 從軍慰安婦, p.31-36.

(27) 오시다 세이지, 「나는 조선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였다」

(28) 인도·비마觀察 美軍 심리전담의 審問調書 (參考資料 1)

(29) 92.1.20字 아사하朝刊 30面, 中國派遣 朝鮮人 慰安兵隊의 前 日
本軍 准尉出身의 證言

(30) 千田, 從軍慰安婦, p.35.

(31) 인도·버마戰線 美軍 심리전팀의 審問調書 (參考資料 1)

4. 配 置

(32) 인도·버마戰線 美軍 심리전팀 審問調書 (參考資料 1)

(33) 김일면, 덕이선다이, 1950. 일월서각 (김일면의 「享壽慰安婦」
(1977, 현대사출판회간)을 김중국이 翻譯한 책), p.44. 參照

(34) 인도·버마戰線 美軍 심리전팀 審問調書 參照 (參考資料 1)

5. 慰安所의 管理

(35) 오기나와駐屯 要塞建築勤務 第6中隊 1944年 12月 軍中日誌
所收 설계약도 參照 (參考資料 11)

(36) 參考資料 7 參照

(37) 마닐라地域 公認飲食店 및 慰安所에 관한 規則 參照 (參考
資料 2)

(38) 軍이 慰安所를 直接 經營한 것을 보여주는 資料가 中國派遣
獨立友城重 砲兵 第2大隊의 1937.12.1-1938.1.31間 陣中日
誌에 包含되어 있음. (參考資料 8)

(39) 第31 警備隊 肅清派遣隊의 警備關係에 朝鮮人 慰安業者를
“使役人”이라고 表現한 資料가 있음. (參考資料 10)

(40) 인도·버마戰線 美軍 심리전팀 審問調書 參照 (參考資料 1)

(41) 마닐라 公認飲食店 및 慰安所 關聯規則 參照 (參考資料 2)

(42) 대관駐屯 司令部가 監獄大巨 앞으로 보낸 慰安業者派遣要請
電報 參照 (參考資料 6)

(43) 마닐라 公認飲食店 및 慰安所 關聯規則 參照 (參考資料 2)

(44) 대부분의 慰安所規則은 同 事項을 規定함.

(45) 檢診結果 營業可能與否를 判定한 文書資料가 들어있는 필
리핀 1010派遣軍兵隊 往書綴 參照 (參考資料 12)

(46) 필리핀駐屯 野戰高射砲 第45大隊 第1中隊 1942年 5月 陣中日誌는 慰安婦의 飲歩區域이 制限되고 있음을 보여줌. (參考資料 9)

(47) 소로이口派遣 憲兵隊 雜書綴 參照

(48) 1938年 12.12의 第2軍 狀況概要는 警備營營部隊가 慰安所 關聯 監督을 擔當 했음을 보여줌. (參考資料 13)

(49) 千田, 從軍慰安婦, p.73.

(50) 마닐라地域 公認飲食店 및 慰安所關聯 規則 (參考資料 2)

(51) 인도·버마 美軍 심리전팀 審問調書, 마닐라地域 公認飲食店 및 慰安所 關聯 規則 參照 (參考資料 1, 2)

(52) 參考資料 9 參照

(53) 마닐라地域 公認飲食店 및 慰安所關聯 規則 參照 (參考資料 2)

(54) 前 慰安婦 鄭○○ 할머니의 證言에 의하던 脚絆을 生理帶로 使用하였다 함.

(55) 인도·버마 美軍 심리전팀 審問調書 參照 (參考資料 1)

(56) 마닐라地域 公認飲食店 및 慰安所關聯規則 參照 (參考資料 2)

(57) 인도·버마 美軍 심리전팀 審問調書 參照 (參考資料 1)

(58) 社會黨 이조議員 發言

(59) 前 慰安婦 鄭○○氏의 例

6. 移 動

(60) 각일편의 「軍隊慰安婦」에서 이와 관련한 日本 將兵의 體面 談을 引用한다.

(데이신파이, 일월서각, 1990. p.148)

북지(北支) 露團의 군용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고 달려간다. 거기에는 빨강, 노랑, 파랑 등 색색의 스카프를 두른 여자들이 타고 있다. 지휘원(地指原)을 몰다래서 열심히 부대를 쫓아 오는 그녀들 가운데는 팔에 권총살을 입은 여자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녀들이 하늘이 주신 천사같이 보였다. 그때 십수명의 적인부가 왔는데 반 이상이 한국 출신이고 일본 규우슈(九州)에서 온 여자도 있었다. 수개월 동안 여자한테서 격려되어 있었던 터라 그이말로 부대가 대소동이었다. 무려 관여 명이 찬호성을 올리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불록건물이 늘어선 병에 들어가자 이불 한 장이 때에 걸려 있었습니다. 몇 천명의 팔과 기쁨이 한 이불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숙치마 하나만 입고 그 이불 속에서 당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인 적인부나 한국인 적인부나 중국인 적인부나 똑같았습니다.」(전 위생대 회계소위 大山正五郎)

(61) 김일년의 활약에 掲載된 寫眞 参照

7. 戦争末期の 状況

(62) 川田文子, 「赤瓦の家」, 1987, 筑摩書房 参照

(63) 류큐駐屯 石兵團의 1944年度 會報綴中에, 空襲을 피하여 部隊로 찾아 온 慰安婦는 새로이 採用하는 것으로 하고, 이기 찾아와 慰安婦로서 契約을 맺은 자가 있으면 前住所, 前慰安所, 姓名, 年齢 등을 把握하여 報告하라는 内容의 會報가 들어 있음.

(64) 前 慰安婦 이○○氏 證言

(65) 김일년, 네이선다이, 원월서각, p.253-277 参照

(66) 인도·버마 美軍 心理전령 審問調査 (參考資料 1)

(67) 泰國에 사는 “노수복” 할머니의 例

8. 聯合軍(주로 美軍)에 의한 現地占領以後 状況

(68) 수마트라섬의 팔렘방에 버려진 韓國人 捕虜監視要員, 日本 會社職員, 慰安婦 등 132人이 「팔렘방 朝鮮人會」를 組織하여 現地 軍政當局에 收容되었다가 歸還했었다. (參考資料 15)

(69) 同 朝鮮人會의 一員이었던 金석계氏의 證言, 광주머일 92.1.17 字 参照

(70) 오키나와駐屯 美軍이 류큐와 오키나와에 남겨진 韓國人 慰安婦를 모아 歸還시켰다는 것을 報告하는 内容의 人證가 스탠포드大學 후버研究所에서 發見됨. (參考資料 3)

(71) 류류地域에서 韓國人 女姓을 모아 오끼나와로부터 韓國으로
歸還시킨다는 内容의 GHQ/SCAP 文書가 美國立文書館에서
發見됨. (參考資料 14)

(72) 學徒兵 出身 정기영氏(1.20. 동지회 부회장) 證言

(73) 비봉기 할머니의 例

(74) 강석자氏의 證言, 光州매일 92.1.17 字 參照

(75) Won-Loy Chen(윈도·버마 美軍 집리전팀의 一員)은 自身
의 著書 'Burma-the untold story'(1986), p.94에서 韓國戰
爭時 유인軍은 歸還 慰安婦들중 一員이 賣春業에 從事하고
있었음을 報告했다고 記述함.

第3部

軍隊慰安婦 證言 事例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우리 정부가 92.2.25-6.25간 접수받은 전
군대위안부의 신고서에서 증언한 내용중 대표적인 사례만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1. 1938年 3月 警察의 拷問 上納要求 拒絶 및 創氏改名 反對理由로 家族이 警察署로 連行되었는데 里長의 勸誘로 愛國奉仕隊에 志願하면 아버지가 釋放될 수 있다가에 스스로 志願하였으나 그길로 從軍慰安婦로 끌려 갔으며, 慰安場所(자카르타)로 連行되어가는 도중 廣東에서 不妊手術을 받았다. 1946年 3月頃 美軍들의 도움으로 자카르타에서 배를 타고 歸還하였다.

2. 1943年 1月 혼자 집을 보던중 낮모르는 身體健康한 男子 2名이 찾아와 불임이 있으니 無條件 나오라며 強제로 끌고가 最初로 下車한 곳이 滿洲 하르빈이며 그곳에서 移動하여 瀋陽현에서 계속 生活하였다. 도착한 첫날부터 방 1칸(약2명) 당 女子 1명씩 비치되어 1日 平均 20명 정도의 軍人을 相對하며 性交 韓國말을 하거나 男子 발기를 查察하면 毆打를 당하기도 하였다. 週日마다 性病検査를 實施하여 感染者는 完治時까지 治療하여 治療後 다시 같은 生活를 繼續하였다.

3. 1943年 9月頃 부산진역앞에서 日本警察에 強制 連行되어, 부산진역 警察署에 押送後 車편으로 日本 오사카로 移送되었다. 慰安婦生活이 근육소격의 脫出을 하다가 불장려 모진피를 맞았으며, 傷處를 치료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慰安婦生活을 强要당하였다.

4. 1940年 9月 日本巡査들이 와서 出動하지 않으면 家族 도드
설려 죽인다고脅迫하여 오사카 근방으로 連行된 후, 3日後부터 하
루평균 5~7명 軍人을 接待하였다. (月 1日 身體檢査日 除外)

5. 1942年 3月 處女供出이란 名目으로 습득을 받고 日本巡査한테
強제로 連行되어 끌려갔다. 의령면 송죽안 가두의 두도 1당씩 분리를
조그마한 방으로 데리고 가서 팔단들으면 죽어버리겠다고 1일 3회
정도 拷問을 强要당하였다.

6. 1933年 4月 산에서 동생과 나뭇을 채취중 日本軍 2명과 韓
國사람 1명에 의해 強制連行되었으며, 釜山으로 끌려간 후 배를 타고
日本으로 건너갔다. 日本 오사카에 내려서 3일경과 후 홋카이도에서
1年 살았으며 그후 다시 오사카에서 살았다. 日本 收容生活中 심한
毆打와 어루 말할 수 없는 苦痛生活로 精神分裂 症勢가 심하여 日
本軍人들이 산으로 내다 버린 가락이 있다.

7. 1937年 4月 日本人한테 실탄공장이라고 해서 속아서 現地에
到着한 후 日本軍 慰安所임을 알았다. 南洋群島 靑우라섬에서 계속
慰安婦로 있었고 거기 서도 여러군데 섬으로 끌려다니기도 하였다.
捕虜(美軍捕虜收容所)로 있다가 解放後 歸還하였다.

8. 1941年 2月頃 日本人 女子 1명과 韓國人 男子 1명의 釜山
工場에의 就職勸誘로 本人以外 약 50여명 정도의 女子가 移送된 후,
日本에 強制徵發되어 現地駐屯 日本軍部隊에 滿留하였다. 日本軍部
隊에서 1일 12-15명의 日本軍을 相對(단 階級別 出入時間과 料金에
차등) 慰安婦生活 後, 軍部隊 移動에 따라 싱가포르에 移送된 후 中國
육단강과 빈강성, 남경, 도문, 관주등 部隊에 配屬 되어 日本에서와
같은 慰安婦生活를 强要당하였으며 일체의 賣外出入은 不許 되었다.
現地에서 年齡層이 높은 사람들은 半以上 死亡하기도 하였다.

9. 1942年 3月 약 14歲때 釜山서 식모살이하던중 놀러나갔다가
日本 巡査에게 잡혀 臨時拘禁所(民間人 집)에서 약 10日 정도 拘禁後
汽車로 釜山서 滿洲 간토성까지 온후 軍部隊밖에 있는(軍人만 相對
하는) 慰安所에 넘겨져 解放時까지 生活하였다. 慰安所에 약 20여
명정도 慰安婦가 있었으며, 하루 약 15-20명 정도 軍人을 相對하며
生活하였다.

10. 1938年 12月 집에서 軍人 20여명이 銃彈을 들고 威脅, 強제로
軍用 트럭에 실려 營上포所在 倉庫에 있는 15명의 女子와 나주에서
15명의 女子들과 合勢되어 또 다시 列車로 신의주, 滿洲를 거쳐 천
진주등 日本軍 히노마루部隊에 도착하였다. 15명씩 한조를 이루어

臨時로 지은 假建物の 여러개에 나누어졌고, 假建物속에는 가라니로
간을 만들어 한사람씩 놓여 恥辱의인 生活속에서 苦痛을 참다못해 목을
매거나 도망을 쳐다 銃을 맞아 죽는 女子들도 있었다.

11. 동네어귀에서 언니와 북을 들던중 日本警察이 強제로 차에
태워서 끌려갔으며, 警察이 軍人들의 宿舎 및 慰安所에 하는 일을
하는데로 간다며 汽車로 釜山에 到着하였다. 히로시마近處 軍部隊에서
1日 日本軍人 10-15명 정도를 相對로 慰安婦生活을 하였으며, 언
니와는 잠깐 같이 慰安婦生活을 하기도 하였다. (遂行年次 未詳)

12. 1942年 11月 16歲에 滿洲 奉天 汽車旅行中에 앞자리의 軍
인에게 一方的 으로 끌려갔다. 軍兵營内の 幕舎에 中國女性들을 포
함하여 약 20명내외가 收容 되어 慰安婦生活을 하였다.

13. 1944年 9月 紡絲工場에서 夜間採集中 日本軍人 15명정도가
武裝으로 들어와 여러분은 앞으로 日本에서 看護員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하자 미리 눈치를 알았던 사람들은 모두 도망가고 나껴지
49명만 遂行되었다. 오즈하타와 히로시마에서 軍部隊 慰安婦로 10
여년간 있으면서 1개소대 50명으로 編成하여 10개소대 500여명이
生活하였다. 하루일과생활이 軍部隊 生活과 똑같으며 個人の 自由가

전혀 없었다. 49명중 혼자만이 살아남았고 일부는 病死하고 일부는
自殺도 하였으며 屍體를 本人이 埋葬하기도 하였다.